

2.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1년 1월 15일
- 발 의 자 : 이영애 의원, 김재우 의원, 배지숙 의원, 강성환 의원, 김동식 의원, 김대현 의원, 김원규 의원, 김지만 의원, 박갑상 의원, 안경은 의원, 윤기배 의원, 이태손 의원, 전경원 의원, 하병문 의원, 홍인표 의원
- 회부일자 : 2021년 1월 18일
- 상정일자 : 제2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21년 2월 1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영애 의원)

□ 제안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 조례지원 대상자 및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규정
(안 제4조, 제5조)
- 사업추진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6조)
-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노력(안 제7조)
- 사회정착 지원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 규정(안 제8조)
-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홍병탁)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 안 제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자 선정 혼란방지를 위한 대상자 요건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제6조**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정의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및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를 규정하였고
- **안 제9조**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

번호	제목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조례의 제정 목적 명시
제2조	정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정의 규정
제3조	시장의 책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제4조	지원대상	조례 지원 대상자 규정
제5조	사업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 명시
제6조	예산의 지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규정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강조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사회정착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
제9조	포상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 규정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음.
- 각종 범죄 등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⁴⁾와 지역사회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어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 직업교육 등 사업추진과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시의 적절하다 하겠음.
- 교정시설 등 출소자(보호관찰 대상자 등)들은 사회변화 지식 부족 등 현실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생계기반 취약 등 제반사정으로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출소자 기간별 재범역률】

(조사대상 : 2016년도 출소자)

재범역기간	계	6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3년이하
재범역인원	7,039	535	1,930	2,906	1,668
기간별 재범역률(%)	25.2 (100)	1.9 (7.6)	6.9 (27.4)	10.4 (41.3)	6 (23.7)
누적 재범역률(%)	25.2 (100)	1.9 (7.6)	8.8 (35)	19.2 (76)	25.2 (100)

※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내부행정통계)

4)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158조원(200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보고서)

- 또한 교도소내에서의 교정·교화시설의 한계 등으로 사회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지 지원사항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안전과 사회통합의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함.
- 다만 법무보호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범죄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들의 제대로 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건강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 마련과 사회복지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 사회정착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법무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비(사업비)확보 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사업비 지원이 필요할 것임.

【대구시 최근 3년간 법무보호대상자 보호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인원	8,024	6,987	7,027	7,346
예산	4,146,261	735,246	766,907	1,882,804

※ 자료 :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보호통계, 결산서 기준 / 대구(2017~2019년)

【대구시 최근 3년간 범죄발생 건수】

[단위 : 건]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평균
인원	75,016	72,341	75,797	74,384

※ 자료 : 대구지방경찰청 통계 / 대구(2017~2019년) 3년 평균 74,384건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범죄 유형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의견은?		전적으로 동감함.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추진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